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 통합 사이트(숲나들e)로 운영됨에 따라 산림청 기본정책과 통일되는 기준을 마련,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 조문 정비 등 산림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숲나들e 정책 기준에 따라 성수기 기간을 변경(안 제3조제3호)

: (현행) 7월~8월 → (변경) 7월 15일 ~ 8월 24일

나. 배상처리 기한 단축(안제8조제2항)

: (현행) 5일이내 → (변경) 3일 이내

다.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조문 정비

(안 제6조제3항제5호~제10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전국 자연휴양림 원스톱 예약시스템인 산림청 사이트(숲나들e)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성수기 기간 및 환불에 따른 배상처리 기한 단축 내용 등을 포함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 - 시설사용료 납부 기간 조정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고, 배상처리 기한 단축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국가보훈 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산림복지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